2021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FAQ

2021. 07.

창 업 진 흥 원

1. 사업신청 p.2 1-1. 신청자격 p.2		
Q	02	팀원과 함께 신청할 경우 제한 조건이 있는지?
Q	03	사업자 등록(간이과세자 포함) 유무, 매출액 미발생 폐업 이력 등에 따른 참여제한이 있는지?
Q	04	본 프로그램 참여 후 차년도 예비창업패키지 또는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는지?
1-2	2. 제	외대상p.3
Q	05	2001.7.1.에 출생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지?
Q	06	타 기관 및 대학 등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참여가 가능한지?
Q	07	참여 업종의 제한이 있는지?
2.	XI:	원내용p.4
6	08	사업화 자금은 무엇이며, 사용가능한 비목 및 사용방법은 무엇인지?
Q	09	대학 재학생(휴학생 포함) 채용 가능 여부 및 고용 형태에 따른 직원과 대표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?
Q	10	사업화 자금으로 제품 양산을 할 수 있는지와 사용 가능한 비목은 무엇인지?
Q	11	사업화 자금 비목 중 '임차료'를 통해 사무실 임대료·월세·관리비 납부 및 기계장치 임차가 가능한지?
Q	12	국외 기업과의 거래를 통한 사업화 자금 집행이 가능한지?
Q	13	교육은 팀 전체가 이수해야 하는지?
3. 신청접수p.6		
Q	14	사업계획서의 '아이템 분야' 체크는 필수인지 여부와 창업 아이템 분야에 해당하는 분야가 없는 경우 어디에 체크해야 하는지?
Q	15	주관기관이 무엇이며,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한지?
Q	16	지역별 T.O.가 정해져 있는지, 이에 따른 주관기관 별 경쟁률이 달라지는지?
Q	17	개인으로 지원하는 것이 팀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선정에 유리한지?
Q	18	발표평가의 진행방식(온·오프라인) 및 대리발표가 가능한지?
4-	2. 산	!정자 의무p.7
Q	19	협약기간 중 취업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?
Q	20	동 프로그램 예비 트랙에 선정 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중 어떠한 형태로 창업을 해야하는지?

1. 신청요건

1-1. 신청자격

Q₀₁ 대학 휴학생 및 재학생, 타 사업장 근로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?

A 01 예비 트랙 : 사업화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보유하고 공고문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, 참여가 가능합니다.
초기 트랙 : 신청자격만 충족한다면 참여가 가능하나, 타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본 프로그램의 협약기간이 중첩될 경우 해당 근로자 인건비의 100%를 현물로계상할 수 없습니다.

- Q₀₂ 팀원과 함께 신청할 경우 제한 조건이 있는지?
- A 02 예비 트랙: 팀원의 연령이나 구성원 수에 제한없이 팀원 구성이 가능합니다. 초기 트랙: 팀원의 구성원 수 제한은 없으나, 팀원의 구성 형태가 공동/각자 대표일 경우 전원 만 20세 이상~만 29세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, 팀원 중 한 명이라도 동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아닌 타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팀 구성이 불가합니다. 단, 팀원의 구성 형태가 공동/각자 대표가 아닌 직원인 경우 팀원의 사업자 등록 보유 유무와 관계없이 구성 가능합니다.
- 3 사업자 등록(간이과세자 포함) 유무, 매출액 미발생, 폐업 이력 등에 따른 참여 제한이 있는지?
- A 03 **예비 트랙**: 공고일('21.06.30.)까지 사업자 등록(간이과세자 포함) 사실 및 휴·폐업이력(매출 발생 등 기업활동 여부와 무관)이 있는 경우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... **초기 트랙**: 공고일('21.06.30.)까지 휴·폐업 사실이 있거나, 동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1개의 사업자(개인, 법인) 이외 다수의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.
- Q₀₄ 본 프로그램 참여 후 차년도 예비창업패키지 또는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 가능한지?
- A 04 **예비 트랙**: 본 프로그램 참여 후 '완료' 판정을 받은 경우, 본 사업수행 이력 및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'22년 예비창업패키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**초기 트랙**: 본 프로그램에 참여 후 '성공' 판정을 받은 경우, 본 프로그램 수행 이력과 관계없이 '22년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

1-2. 제외대상

Q05 **2001.7.1.에 출생자는 모집공고에 참여할 수 없는지?**

A 05 출생연월일이 1991. 7. 1. ~ 2001. 6. 30. 내 해당하는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Q06 타 기관 및 대학 등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참여가 가능한지?

- A 06 공고일 이전 중소벤처기업부(舊 중소기업청)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타 중앙 정부·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(기업)와 해당 사업과 협약을 체결 후 수행을 완료한 자(기업)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. 또한,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 '21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들과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, 타 사업 동시·중복 수행이 불가하여 1개 사업만 수행할 수 있음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*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: 창업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, 지식재 산권 확보,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창업자(기업)에 지원하는 사업
 - ** 현재 공고 중인 실전창업교육, 스타트업-청년인재 이어드림 교육, 도전! K-스타트업 2021은 교육, 행사·네트워크에 해당하므로 동시신청이 가능

○ 07 참여 업종의 제한이 있는지?

A 07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업종을 제한하지 않습니다. 단, 정해진 기간 동안 아이템 제작 및 사업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본 프로그램의 특성 상, 점포운영 등 서비스 지원 기반이 아닌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아이템 제작 및 사업화 내용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.

2. 지원내용

- Q₀₈ 사업화 자금은 무엇이며, 사용가능한 비목 및 사용방법은 무엇인지?
- A 08 사업화 자금 정의 : 선정자가 협약기간 동안 시제품 제작, 지재권 취득, 마케팅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금 및 신청자가 현물로 구성한 자금으로 공고문 내 기재된 비목으로만 집행 가능합니다. 추후 비목별 세부 내용이 기재된 기준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.
 - * 공고문 상 예비 트랙과 초기 트랙의 사용가능 비목이 다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사업화 자금의 사용방법 : ① 선정자가 '사업비 계좌' 개설 및 '사업비 카드' 발급 → ② 사업비 카드 사용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→ ③ 사용 증빙을 주관기관에 제출 → ④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용 적정성 검토 → ⑤ 검토결과 적정 시 주관기관이 시스템으로 승인 처리 → 시스템을 통해 거래처로 직접 사업비 지급

사용 유의사항 :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, 중도포기 또는 실패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.

- ② 의 대학 재학생(휴학생 포함) 채용 가능 여부 및 고용 형태에 따른 직원과 대표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?
- A 09 **예비 트랙**: 대학 재학생(휴학생 포함)의 채용이 가능하며, 고용 형태(정규직·기간제 근로자 등)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 완료 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. 단, 대표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.

초기 트랙: 대학 재학생(휴학생 포함)의 채용이 가능하며, 고용 형태(정규직·기간제 근로자 등)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 완료 시 인건비지급이 가능합니다. 대표자(=신청자)의 인건비는 현물(=대응자금)로만 집행할 수 있으며 직원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되지 않은 인력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.

Q₁₀ 사업화 자금으로 제품 양산을 할 수 있는지와 사용 가능한 비목은 무엇인지?

A 10 **예비 트랙**: 사업화 자금은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해 활용해야 하므로 제품 양산을 위한 집행은 불가능합니다. 사용 가능 비목은 재료비, 외주용역비,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, 인건비, 지급수수료, 여비, 교육훈련비, 광고선전비로 비목별 정의는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초기 트랙: 사업화 자금은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해 활용해야 하므로 제품 양산을 위한 집행은 불가능합니다. 사용 가능 비목은 재료비, 외주용역비, 기계장치구입비,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, 인건비, 지급수수료, 여비, 교육훈련비, 광고선전비로 비목별 정의는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Q11 사업화 자금 비목 중 '임차료'를 통해 사무실 임차료·월세·관리비 납부 및 기계 장치 임차가 가능한지?
- A 11 **예비 트랙** : 협약기간 이내로 한정하여 사무실 월세 및 기계장치 임차료 납부가 가능합니다.

<u>초기 트랙</u>: 협약기간 이내로 한정하여 현물로 계상하지 않은 사무실 월세 및 기계장치 임차료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.

- Q 12 국외 기업과의 거래를 통한 사업화 자금 집행이 가능한지?
- A 12 **예비 트랙**: 국외 기업과 거래 시 협약기간 내 납품 및 검수를 완료해야 하며, 비목별 증빙자료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업화 자금 집행이 가능합니다. (관세는 집행 불가) 이에, 국외 기업과의 거래 시 납품기한 및 비목별 증빙자료 등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

초기 트랙: 국외 기업과 거래 시 협약기간 내 납품 및 검수를 완료(특히 기계 장치 구입비의 경우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납품 필수)해야 하며, 비목별 증빙자료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업화 자금 집행이 가능합니다. (관세는 집행 불가) 이에, 국외 기업과의 거래 시 납품기한 및 비목별 증빙 자료 등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

- Q₁₃ 교육은 팀 전체가 이수해야 하는지?
- A 13 **예비 트랙** : 신청자(=대표자)는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, 팀원은 이수 의무가 없습니다.

<u>초기 트랙</u> : 교육 이수 의무가 없습니다.

3. 신청 · 접수 · 평가

- Q14 사업계획서의 '아이템 분야' 체크는 필수인지 여부와 창업 아이템 분야에 해당하는 분야가 없는 경우 어디에 체크해야 하는지?
- A 14 아이템 분야는 필수 체크사항이며, 창업 아이템의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분야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**Q**15 주관기관이 무엇이며,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한지?
- A 15 주관기관은 동 프로그램의 선정평가, 사업화 자금 집행관리,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본 사업 전반을 운영 및 담당하는 기관을 말하며, 예비 트랙은 25개, 초기 트랙은 10개의 주관기관이 있습니다. 신청자는 거주지 등과관계없이, 원하는 지역의 주관기관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초기 트랙은 주관기관 동일권역 소재 기업을 50% 이상 선발할 예정입니다. 공고기간종료 후에는 주관기관 임의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주관기관 소재지 및 공고문에 첨부된 주관기관 소개자료를 꼼꼼히 검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16 지역별 T.O.가 정해져 있는지, 이에 따른 주관기관 별 경쟁률이 달라지는지?
- $oldsymbol{A}$ 16 **예비 트랙** : 신청·접수 완료 후, 규모에 따라 주관기관별 선정 T.O를 결정 할 예정이므로, 주관기관에 따라 T.O 및 경쟁률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<u>초기 트랙</u>: 지역별 주관기관당 배정된 T.O의 50% 이상을 동일권역 소재 기업으로 선발 예정이며, 주관기관별 신청수요에 따라 경쟁률이 결정됩니다.

- **Q**17 개인으로 지원하는 것이 팀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선정에 유리한지?
- $f A_{17}$ 개인 또는 팀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선정평가 시 유불리는 없습니다.
- **Q**18 발표평가의 진행방식(온·오프라인) 및 대리발표가 가능한지?
- A 18 발표평가 방법은 추후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안내될 예정입니다. 발표평가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참석 및 발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
4. 선정자의 의무

Q₁₉ 협약기간 중 취업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?

A 19 **예비 트랙**: 협약기간 중 취업이 제한되지는 않으나, 취업으로 인한 사업 포기, 휴·폐업, 공고문·지침·규정에 따른 의무사항 불이행 등이 발생 시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. 동 프로그램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의 시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인 만큼 취업계획이 있으신 분들보다는 본인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창업비전을 가진 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.

초기 트랙: 협약기간 중 취업이 제한되지는 않으나, 신청자의 인건비를 100% 현물계상 하였다면 취업한 사업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현물계상 비율이 조정될수 있으며, 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취업으로 인한 사업 포기, 휴·폐업, 지침·규정상 의무사항 불이행 등 발생 시 사업비 환수,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- ②20 동 프로그램 예비 트랙에 선정 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중 어떠한 형태로 창업을 해야하는지?
- A 20 예비 트랙 선정 후, 창업(사업자 등록)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. 다만, 사업자를 등록하실 때 세금, 외부 투자유치, 해외 진출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사업에 적합한 사업장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